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

요약

2022년 감사원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사적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기준 마련을 요구함. 이에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사적연금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도함.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사적연금소득을 포함할 경우 이중부과, 일시금 수령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적연금활성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사적연금 일시금 수령에는 부과되지 않으면서 연금 수령 시는 부과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 감사원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사적연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적연금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을 요구함
 - 최근 감사원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공·사적 연금소득 모두가 포함되어 있으나 공적연금소득만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사적연금소득은 제외되어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소득세법 §20의3에 의하면,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해당됨
 - 사적연금소득은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퇴직연금 적립금(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함)¹⁾,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공제된 납입액) 그리고 이 둘의 운용실적에 따른 증가 금액(투자수익)임
 -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적연금소득 미적용으로 부과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2020년 기준 384억 원으로 추정됨
 - 감사원은 55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5백만 원 이상인 소득자를 분석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에 사적연금소득을 반영할 경우 대상자, 사적연금소득, 건강보험료 증가액을 산출함
 - 이에 의하면, 대상자는 6만 8천 명, 사적연금소득은 6,861억 원이 되어 건강보험료 증가액은 384억 원으로 추정됨

〈표 1〉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 사적연금소득 반영 시 추정 대상자 및 증액 건강보험료(2020년 기준)

구분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전체
대상자 수(명)	40,468	6,721	68,436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억 원)	4,882	1,979	6,861
건강보험료 증가액(억 원)	180	204	384

주: 55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5백만 원 이상인 사람을 분석 대상으로 함
 자료: 감사원(2022), "감사보고서_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1)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소득으로 수령하기 위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된 경우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의미함(소득세법 §20의3 제1항 제2호 가목)

- 현행 건강보험법상 이연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이 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은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로 인해 이중 보험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연금소득은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퇴직소득인 이연퇴직소득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됨
 - 근로기에 세제혜택을 받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적립했던 사적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중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²⁾
- 소득세법에서 발생하지 않는 문제들이 건강보험료 부과 시 발생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는 건강보험법에는 소득세법과 달리 납부 시 공제하거나 분리과세 조항과 같은 특례적용이 없기 때문임
 -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과에 적용되는 소득은 둘 다 일정 소득수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으로 부과된다는 공통점이 있음(소득세법 §14, 건보법 §70;§71; §72)
 - 연금계좌 내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은 연금소득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과세할 경우 이연퇴직소득은 분리과세되고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 수령 시 60% 적용)만 과세됨
 - 반면 동일한 이연퇴직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시에는 분리하여 부과되지 않고 공·사적 연금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특히, 퇴직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나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은 아니어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만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표 2〉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비교

구분	소득세법상 과세체계		건강보험법상 건보료 부과 체계	
	주요내용	법령	주요내용	법령
면세 및 보험료 면제 기준	- 면세점 이하 소득자(저소득자)	-	- 부과소득 이하 소득자(피부양자)	-
과표 및 부과소득 기준	- 개별소득 과세 후 종합소득(연금소득 포함) 기준으로 과세	소득세법 §14	- 보수월액, 소득월액(종합소득 형태, 연금소득 포함)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건보법 §70; §71; §72
연금소득 정의 및 포괄범위	- 공·사적연금소득 * 연금계좌 내 퇴직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적용(이연퇴직소득)	소득세법 §20의3	- 공·사적연금소득(소득세법 §20의3 수용) * 연금계좌 내 퇴직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적용	건보법령 §41; §42
보험료 공제 여부	-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3	- 규정 없음	-
분리과세 여부	- 분리과세 연금소득 · 연금계좌 내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 · 부득이한 인출 · 연금소득 연 1,200만 원 이하 ¹⁾	소득법 §14	- 분리부과 기준이 없어 모든 연금소득은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연금계좌 내 퇴직소득은 보험료 부과 대상 가능) * 연금소득은 관행적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편 논의에 따라 부과가능	-
이연퇴직소득세 할인	- 연금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 할인 · 수령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 수령 10년 초과: 퇴직소득세의 60%	소득법 §129	-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별도 규정없음	-
퇴직소득 과세	-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적용	소득법 §48	- 퇴직소득(퇴직금)은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	건보법령 §33

주: 1) 연간 1,200만 원 조건 없이 모든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혹은 종합소득 과세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해 짐(2023년 이후)

2) 문심명(2022),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및 쟁점」,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사적연금소득이 포함될 경우 앞서 살펴본 건강보험의 재정 및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겠으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활성화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됨
 -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과대상 소득 증가로 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과대상 소득의 증가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편입으로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임(〈표 1〉 참조)
 - 연금가입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연금 수령 및 가입유인은 급감하게 될 것임
 - '21년 중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397,270좌) 중 대부분인 95.7% (380,286좌)가 일시금을 선택하고 있어 연금화 유인에 매우 더딘 편임³⁾
 - 이는 그동안 사적연금소득(이연퇴직소득 포함)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 우려가 있음

-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은 타당하나, 동일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서로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부과, 타 제도에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전환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고 피부양자 축소를 통한 부과대상자 확대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소득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할 경우 이중부과, 일시금 수령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연금활성화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연금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혹은 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보험료에 대한 이중부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퇴직일시금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퇴직소득 인출 유형에 따른 불합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경우를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면제, 감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3)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4. 17),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